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12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8. 22.

다. 회 부 일 : 2025. 8.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액투자자와 연간 통산 손실투자자 증권거래세 환급 신설 (김미애 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소액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신설(제10조의3) ○ 증권거래세 환급 대상 - 해당 연도의 총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의 총 주권양도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 환급금 - 해당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 -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비적용 ○ 환급절차 - 환급받으려는 자가 환급신청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김미애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제12312호)

☐ 개정안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증권거래세율을 0.35%(2022년까지는 0.43%)로 하면서, 탄력세율 제도를 규정¹⁾하고 있고,

1)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정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① 코스피 0.00% (2022년까지는 0.08%), ② 코스닥 0.15% (2022년까지는 0.23%), ③ 코넥스(0.10%), ④ K-OTC 0.15% (2022년까지는 0.23%)의 세율을 규정²⁾하고 있음³⁾.

한편,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해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이상을 종합하면,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는 0.15%의 거래세(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코넥스 시장에는 0.10%의 거래세가 적용됨.

한편,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증권거래세율을 농특세 0.15%를 포

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 3)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8조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지 않은 K-OTC 시장을 통한 거래세율까지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4)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5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함하여 0.2%(0.05% 인상)로, 코스닥과 K-OTC 시장도 0.2%(0.05% 인상)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증권시장별 거래세율]

구 분		2020년	2021~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정)
탄력 세율	유가증권시장(코스피)	0.25%	0.23%	0.20%	0.18%	0.15%	0.20%
	농어촌특별세율	0.15%	0.15%	0.15%	0.15%	0.15%	0.15%
	코스닥	0.25%	0.23%	0.20%	0.18%	0.15%	0.20%
	코넥스	0.10%	0.10%	0.10%	0.10%	0.10%	0.10%
	K-OTC ¹⁾	0.25%	0.23%	0.20%	0.18%	0.15%	0.20%

* 1) K-OTC(Korea Over The Counte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시장

* 거래세율 = 증권거래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증권거래세의 신고세액은 2020년 9조 5,151억원에서 2024년 4조 5,97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증권거래세 신고세액 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과세표준 (조원)	5,718	6,922	4,056	4,878	4,779
신고세액 (억원)	95,151	99,197	58,199	61,041	45,973

* 자료: 국세통계연보,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11-7)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첫째, 증권거래세를 환급하는 것은 조세의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할 여지가 있음.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손익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세를 납부하게 됨. 이에 따라 손실을 본 투자자가 이득을 본 투자자에 비하여 심지어 더 많은 거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⁵⁾도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과세 방식은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세의 응능부담원칙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둘째, 소액투자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은 국내 증권 거래 시 투자자의 세부담을 낮추어 국내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증권거래세의 존재는 국내 주식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증권거래세는 거래비용으로서 투기적 단기매매를 통한 시장 변동성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소액투자자 및 손실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은 고빈도 매매(초단타 매매, high-frequency trading)⁶⁾ 등을 통한 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7년에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이 약 1,930만원이고, 거래세는 100만원 납부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약 930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11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남.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2021년 9월호, p.85.,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

6) 컴퓨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내는 주문을 수천 번 반복하는 거래로서 알고리즘 매매 방식. 주가나 파생상품의 미세한 가격 변동을 이용해 1초에 수백번에서 수천번까지 매매해 수익을 올리기도 함. 대량의 주문과 주문취소·정정이 지극히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데 허수성 호가가 이뤄지면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시장에 대한 약간의 비정상적 충격만으로도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영향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

둘째,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